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957 발의연월일: 2022. 8. 22.

발 의 자:이종성・김선교・박대수

박덕흠 • 박수영 • 정운천

김용판 · 최영희 · 태영호

한무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매월 10만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출생 초기 주 양육자의 직접 양육이 필요한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주 양육자의 돌봄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되는 양육자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50만원 이상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아동 발달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4조 제5항). 법률 제 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매월 50만원"을 "매월 50만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률 제1857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30만원에서 50만원"을 "30만원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및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 ④ (생 략)	지급액) ① ~ ④ (현행과 같
	<u>ㅇ</u>)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미만	5
의 아동에게는 <u>매월 50만원</u> 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금액</u>
법률 제18579호 아동수당법	법률 제1857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아동수당 추가지급 금액에	제6조(아동수당 추가지급 금액에
관한 특례) 제4조제5항의 개정	관한 특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u>2024년 12월</u>	<u>2023년 12월</u>
<u>31일</u> 까지는 <u>30만원에서 50만원</u>	<u>31일30만원 이상</u>
의 금액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	
액을 지급한다.	